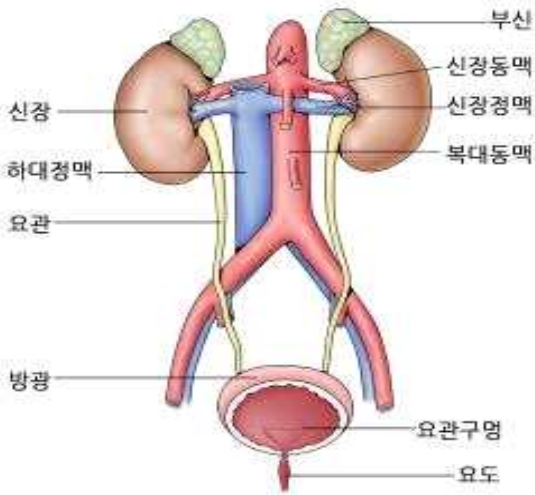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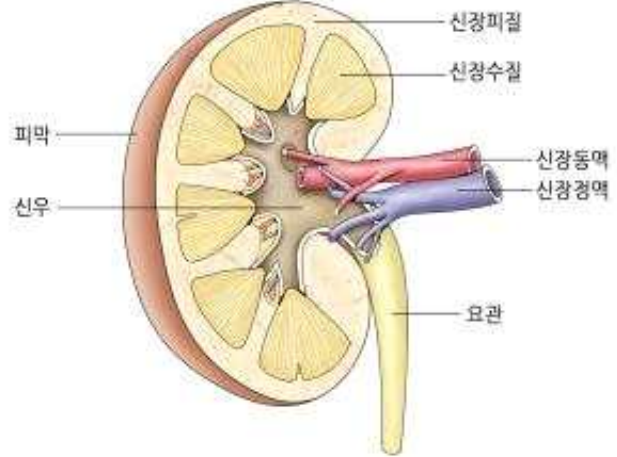


제8절 신장의 장애



<비뇨기계의 구성>



<신장의 구조>

1. 장애등급구분의 기준

장애등급	장애정도
1급 8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-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받고, 신장질환 이상도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량·알부민·칼슘과 인의 곱 중 두개 이상의 검사결과가 기준에 해당하는 자
2급 13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-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받는 자
3급 13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- 추정사구체여과율이 15ml/min/1.73m² 미만인 자
4급 11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- 신장을 이식받은 자

2. 인정요령

가. 신장의 장애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.

- (1) 신장질환에 따른 장애의 정도는 오심(토할 것 같은 메스꺼운 증상), 구토 등의 임상증상, 신장기능 검사성적, 일반상태, 치료 및 병상의 경과, 투석요법 실시상황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인정한다.
- (2) 진행만성콩팥병의 초진일은 추정사구체여과율이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30 ml/min/1.73m² 미만으로 처음 확인되는 날로 인정한다.
- (3) 진행만성콩팥병으로 지속적으로 투석요법을 받고 있는 자는 2급으로, 신장을 이식받은 자는 4급으로 인정하되, 임상증상 및 검사성적 등에 따라 다시 상위 등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(4) 투석요법을 받고 있는 자의 완치일은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하며, 신장을 이식받은 자의 완치일은 신장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한다.
- (5) 신장기능 검사성적은 그 성질상 변하기 쉬우므로 신장질환의 경과 중에 있어 가장 병상을 적절히 나타내는 검사성적을 근거로 판정하며 투석요법을 받는 사람의 신장기능 검사성적은 최근 투석 전 실시한 3회 이상의 검사결과를 고려한다.

나. 신장질환 이상도 혈액검사성적 지표는 다음과 같으며, 검사항목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될 때 1급으로 인정한다.

<신장질환 이상도 혈액검사성적 지표>

검사항목	단위	검사성적
혈색소량(Hb)	g/dl	8 이하
알부민	g/dl	2.5 이하
칼슘과 인의 곱	-	65 이상

다. 기초질환으로 신염, 전신성 홍반성낭창 등이 있었던 자가 진행만성콩팥병이 발생된 경우에는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된 상병은 진행만성콩팥병으로 본다.